

● 주차장관리규정(0704)

제정 2003. 3. 13 규정 제123호
개정 2010. 8. 12 규정 제35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가 주차장 사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주차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차장” 이라함은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사업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직접 설치 운영 및 위탁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 2 장 운영 및 관리

제3조(관리자) 주차장의 운영관리자는 공사의 사장이 되며 각 주차장에 별도의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위탁 운영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요금은 주차장 주변 여건 및 물가변동 등 사정을 참작하여 공사의 사장이 결정한다.

② 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를 기준으로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다만, 가산금은 해당 주차요금의 4배 이내가 되도록 한다.

1. 입차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이 초과한 것으로 보고 그 이후 계속 주차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장 운영시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한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며, 출차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출차 발견시까지를 주차시간으로 본다.
3. 주차장 운영종료 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속 주차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운영종료 시간까지를 주차시간으로 하고 징수절차는 시행세칙

으로 정한다.

4. 주차료 미납차량 중 도난차량으로 판명된 차량은 관할 경찰서 도난신고 접수전일의 주차장 운영종료 시간까지만 부과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납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자동차 압류촉탁 등 징수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주차제한) 주차장 관리인 및 위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제한 할 수 없다.

1.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구조의 차량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도난차량
5. 기타 주차장내 주차가 부적합한 차량

제6조(주차장의 표시) ① 법 제18조에 의한 주차장의 표시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기재된 주차장 이용안내표지를 “별표 1” 과 같이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게시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위치
2. 주차장의 명칭
3. 주차장의 이용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4.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5. 주차장의 운영시간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주차장의 운영시간) ①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주야간을 구분하여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사장은 공사 실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시간 중 주간은 하절기는 08시부터 18시로 하고 동절기는 08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이 경우 하절기는 3월부터 11

월까지로 한다.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주차요금 징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차시간 측정 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② 주차요금 징수는 최초 30분으로 하고 30분 이후 주차시간은 10분 단위로 하되 1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0분으로 한다.
- ③ 주차요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15인승미만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이 2.5톤미만 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승용차로 본다. 다만, 크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주차구획선 점유면적을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한다.
- ④ 사장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정기주차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관제시설장비의 정기주차표 전산출력용지가 있을 경우 그에 의한다.
- ⑤ 월정기주차권의 계약기간은 3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제9조(주차요금 감면) 주차요금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 상이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케 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주차 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경자동차(1000cc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개정 10.8.12>

제10조(결손처분) 다음 각 호의 징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주차요금 및 가산금이 체납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
2.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

제11조(주차장 관리) ① 주차장 관리인 및 위탁운영자는 주차장 시설물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인 및 위탁운영자는 법 제17조제3항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1. 주차권 분실로 인한 불이익 처분사항은 주차장 관리인 및 위탁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주차장 관리인 및 위탁운영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차내 현금 및 귀중품 도난과 차량 상태를 확인시키지 않은 차량의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주차장 관리인 및 위탁운영자는 주차차량의 훼손·망실·도난으로 인한 피해액을 변상하기 위하여 주차장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주차료 수입금관리) ① 공사가 직접 주차장을 운영할 경우 당일의 주차장 수입금은 주차장 관리인이 공사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매일 입금하고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의한다.

제13조(주차장내 금지사항) 주차장 관리인은 주차장이용자가 주차장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세차·차량의 수리 및 급유하는 행위
2. 주차장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주차장에 각종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제14조(준용) 이하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다.

제15조(시행세칙) 사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부 칙<03. 3.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8.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7조 관련)】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90cm
8 0 cm	<p>주차장 이용안내</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주차장 위치2. 주차장 명칭3.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4. 가산금 징수5. 주차장 운영시간6.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주차제한 차량 등) <p>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p>

□ 색채 및 글씨

○ 바탕색 : 녹색, 글씨 : 흰색(글씨체 : 고딕)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 규칙에 준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10.8.12>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1. 주차장 위치
2. 주차장 명칭
3. 본 주차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입니다.
4. 주차시에는 필히 “주차증”을 받으시기 바라며, 출차시에는 주차관리요원에게 “주차증”을 제시하여 주차요금을 계산한 후 출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주차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차요금표

구분	시간주차(1회)			월정기 주차요금		
	최초 30분	30분초과 후 10분당	1일 주차요금	주간	야간	주/야간
내용						

나. 주차요금의 경감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1급 내지 6급)가 본인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케 하는 경우 1시간까지는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1시간초과 후 주차요금은 50% 경감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경자동차(1000cc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합니다.

다. 가산금의 징수

- 규정 주차요금 미납등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의 4배까지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6. 주차시간이 30분미만 일때에는 이를 30분으로 하고 30분 초과후 10분미만 일때에는 이를 10분으로 합니다.

7. 주차제한 차량

- 가.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구조의 차량
- 나.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 다.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8. 주차시간

구분	주간	야간
하절기(3월 ~ 10월)	08: 00 ~ 18:00	18:00 ~ 08:00
동절기(11월 ~ 2월)	08: 00 ~ 17:00	17:00 ~ 08:00

9. 기타사항

- 가. 귀중품은 반드시 주차장 이용자가 직접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나. 주차관리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물건의 분실시 책임은 주차장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별지 제2호 서식(제9조 관련)】

정기주차표

(앞면)

정 기 주 차 표 (보 관 용)	
PARKING CARD NO.	
차량번호	
발 급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차요금	원
주차장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뒷면)

정 기 주 차 표 (영 수 증)	
PARKING CARD NO.	
차량번호	
발 급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차요금	원
주차장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주차장관리규정 제9조제5항에 의거 정기주차 요금으로 징수합니다.
2. 차내 현금 및 귀중품 도난시와 주차장법 제 17조제3항에 의거 주차관리원에게 차량상태를 확인시키지 않은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3. 주차장법 제17조제3항에 의거 주차장 관리인의 책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이므로 천재지변 및 시위에 의해 차량이 훼손된 경우는 책임이 없습니다.
4. 고객용 주차표는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정기주차표의 계약유효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